

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제정

□ 제정이유

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었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읍·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함.(안 제4조)
- 나. 민원모니터 제보대상을 정함(안 제7조)
- 다.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

-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5,130천원

- 제보보상비 : 1,500천원
- 회의참석 소요경비: 1,000천원
- 선진지 견학경비 : 1,630천원
- 기타경비 : 1,000천원

□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